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권유문서

1.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대상, 제공방법

(1) 투자일임

투자 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투자일임의 범위

- ①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
- ②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업무
- ③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분석 및 투자여부 등에 대한 결정
- ④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운용, 매매주문, 결제, 평가
- ⑤ 기타 투자일임과 관련한 의사결정

(3) 투자대상

- ① 채무증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 ②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 ③ 수익증권 :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것, 집합투자업자에 있어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 ④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 ⑤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 ⑥ 증권예탁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 ⑦ 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에 규정된 것
- ⑧ 발행어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6 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360 조 제 1 항에 따라 발행된 어음
- ⑨ 유동성자산 : 현금, 기타 예수금 등
- ⑩ 투자대상 자산의 지역별 범위 : 국내 및 해외
- ⑪ 투자대상의 제한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 운용 및 위험관리를 위하여 상기 열거된 투자대상 중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제한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고객에게 제시합니다.

(4) 투자일임의 제공방법

- ①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근거하여 투자자산운용사가 내린 최선의 판단을 바탕으로 투자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매매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합니다.
- ②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분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등의 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외부 투자자문사/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가. 회사는 외부 투자자문사/위탁운용사의 선정 시 당사 내부지침에 따라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중개업자별 자문계약 건수,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운용 성과 및 리스크 관리 수준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나. 회사는 외부 투자자문사/위탁운용사의 경영상태 및 투자자문/위탁 운용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하며 자본 잠식 등 경영 악화 또는 투자자문/위탁 운용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해당 투자자문/위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의 해지나 다른 외부 투자자문사/위탁운용사로의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나목에 근거하여 회사가 외부투자자문사/위탁운용사와 계약해지 또는 다른 외부투자자문사/위탁운용사로 교체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 또는 교체일 1개월 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 ④ 회사는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한 후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특정 랩어카운트의 운용상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조회를 고객에게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예 : T+2 일, T=매매일자).
- ⑥ 고객이 당사와 채무증권(ELB 제외)에 80% 이상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이하 '채권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편입 채무증권의 가중평균 만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보다 편입 채무증권의 가중평균 만기가 90 일을 초과 하는 자산 편입에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편입 채무 증권 의 최 대 만기 및 가중 평균 만기 사항)을 약정서 내 '운용지시' 등 계약 서류에 기재하여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투자일임 운용절차

회사가 투자일임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목적 등의 분석, 약관·계약권유문서의 설명 및 제공

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며, 약관·계약권유문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제공합니다.

(2) 랩어카운트 유형 선정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고객 상황에 적합한 랩어카운트 유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3) 투자결정 및 계약체결 단계

- ① 고객은 추천된 랩어카운트 유형을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하며, 계약 관련 주요내용을 기재한 약관 및 계약권유문서를 수령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② 고객은 약관의 별지에서 정한 최소계약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하여야 하며, 만약 최소계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회사의 승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최소계약금액이라 함은 효율적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위해 회사가 정한 기본 예탁금액을 말합니다
- ④ 예탁 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투자대상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합니다.
- ⑤ 채권형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고객이 운용지시서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계약기간보다 편입 채무증권의 가중평균 만기가 90 일을 초과하도록 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는 약정서 內 '운용지시' 등 계약서류에 편입 채무증권의 최대만기, 가중 평균 만기 등을 기재하여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4)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

(5)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 파악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 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

(6) 투자일임 성과보고

- ①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자산현황, 매매거래, 투자성과 등을 기재한 투자일임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우편발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② 고객은 계좌의 보유자산 현황 및 투자수익률 등 운용내역을 담당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전자매체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1) 투자일임업무와 관련된 금지 행위

- ①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②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③ 투자일임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④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 ⑤ 다른 투자일임회사 등과 서로 짝 후 매매정보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위
- ⑥ 채권형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보다 편입 채무증권의 가중평균 만기 90일을 초과하는 자산을 편입하는 행위 (2024. 07. 31 부터 적용)
- ⑦ 기타 관계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2)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수립

- ① 회사는 투자자산운용사 및 투자일임업무 관련자들이 관계법규 및 회사 방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물적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② 투자일임 관련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가. 운용의사결정 단계별 책임 주체의 권한 및 의무
 - 나. 운용 및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
 - 다.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4. 고객과 회사의 권리 및 의무

(1) 회사의 권리 및 의무

① 고객의 성향 등 사전파악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합니다.

② 비밀유지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다.

③ 약관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가.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안내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나. 가 목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기준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 회사는 나 목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라. 고객이 나 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마.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온라인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④ 투자결과 등의 통지의무

가.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나)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라)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마)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바)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은 매 분기(1/4, 2/4, 3/4, 4/4 분기)를 기준으로 하며, 정기적 발송주기는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투자일임보고서의 발송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 및 운용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한 발송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⑤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및 계약해지 요청의 수용 의무

가. 회사는 약관·계약권유문서 및 계약서 등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제한을 수용하고, 계약해지 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자산배분 유형의 변경
2. 일시적 운용 정지
3. 투자비중 지정
4.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5. 기타 계약에서 정한 운용조건

나. 회사는 고객의 제한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잦은 제한사항 요청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운용의 특성상 고객 제한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한 후 제한사항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해지와 관련된 투자일임수수료 및 기타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권리 및 의무

① 운용에 대한 합리적 제한 및 계약의 해지 요청

가. **고객은 약관·계약권유문서 및 계약서 등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재무상태, 투자목적에 대한 상담 요청

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응합니다

③ 통지의무

가. 고객은 계약기간종료일에 계약의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종료일까지 계약종료의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④ 비밀유지 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 정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⑤ 투자일임 결과에 대한 책임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투자일임 결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투자일임계약의 연장 및 해지

(1) 계약의 연장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서 정한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회사 양자간 합의로 해당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 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기간 및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반대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고 운용을 종료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및 조건의 연장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해지수수료 등의 불이익(투자일임재산의 매매·평가손실 등 운용결과에 기인한 사항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별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신규판매 및 계약연장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계약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2)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 변경 및 투자일임업무의 위탁 또는 위탁운용을 받은 제3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인출로 인하여 투자일임재산의 평가금액이 회사가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 수수료, 제세금, 기타필요경비 등의 인출로 인해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

나.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다. 기타 투자일임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라. 고객이 회사의 연 1 회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회신하지 않고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된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⑤ 계약의 해지 시 자산의 형태는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계약 해지시점에 일임계좌에보유한 증권 등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이나 제도상 고객이 보유할 수 없는 증권 또는 자산으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해지시점에 현금화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임재산을 실물 등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해지시 계좌에 랩전용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액환매(매도) 후 계약해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⑦ 약관의 별지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납부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나.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⑧ 상기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수수료 이외의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성과와 연동한 보수 등 사전에 정한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합니다.

6. 투자일임수수료 및 기타 비용 (약관의 별지 참조)

(1) 투자일임수수료 산정방법 및 지급 시기

- ① 투자일임수수료는 관계법규의 범위 내에서 약관의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하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매 월 종료 후 다음 월 첫 영업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첫 영업일, 계약해지 및 종료일, 최초가입시, 계약종료일(계약재연장일) 다음 첫 영업일, 전액 출금/결산 출금 시 등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백원미만 절사)
- ②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되며, 계좌내 현금의 잔고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약관 별지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며, 고객은 동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 ③ 제 2 항의 기간까지 고객이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응하는 고객 계좌내 재산을 고객과 사전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합니다
- ④ 회사는 투자일임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 및 서비스 수준을 감안하여 자산별로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회사가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가입고객과 협의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 ①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당사가 수취하는 주식/채권 등 증권매매에 따른 위탁매매수수료(유관기관수수료 포함)는 별도로 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일임계약 시 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일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일임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이외에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 등과 연계된 성과보수,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성과보수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합니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일임수수료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법에 의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세금 및 기타 수수료는 고객의 계좌에서 투자일임수수료와 별도로 인출됩니다.

7. 자산의 평가 및 투자성과 산정 방법

(1) 자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0 조, 「금융투자업규정」 제 7-35 조 및 7-36 조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하며, 다음 각 항에 기재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령을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가.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

나.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을 기준으로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평균값

다. 비상장채권 :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평균값

- 라. 기업어음 :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평균값 혹은 매수수익률로 평가한 가격
- 마. 전자단기사채 :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평균값 혹은 매수수익률로 평가한 가격
- 바. 다목에서 마목까지 해당되는 자산을 1 개의 채권평가회사에서만 가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이 없을 경우 해당 채무증권의 취득가로 평가한 가격
- 사. 장내파생상품 :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서 공표되는 가격
- 아. 장외파생상품 :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 자. 국내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
- 차.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장가격이 있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
- 카. 상장 해외주식 : 원칙적으로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 증권시장의 최근일 최종시장가격
- 타. 외화표시 상장채권 : 그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장가격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파.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하. 실물자산 : 해당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 등을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②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회사는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부실우려, 부도 등으로 매각이 곤란한 자산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0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35 조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거나, 관련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의 목적은 최소 투자일임재산 산정 또는 투자성과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해당 자산의 현금화 가능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합니다.

(3) 투자성과 산정 방법

투자수익률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평가일 전일 기준 평가금액의 증감률로 합니다.

8. 투자일임업무 담당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일임운용 업무 수행

- ① 본사 투자자산운용사 : 지분증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운용, 투자전략 수립 및 집행, 정기적 투자일임보고서 고객에게 발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
- ②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 : 지분증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운용, 기타자산 관리, 투자일임계좌의 투자성과 평가, 분석 업무수행
- ③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 : 투자일임업무의 일부를 일임 받아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운용, 투자전략 수립 및 집행
- ④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 운용의 적정성 점검

(2) 운용권한의 위임

투자자산운용사가 연수, 출장, 휴가 등으로 일시적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산운용사에게 운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본사,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투자일임업무를 행하는 임·직원 포함) 성명, 주요경력 및 감독기관으로부터의 문책사실 여부 (설명서 첨부 1 참조)

(4)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의 변경

①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를 변경하고자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부득이한 사유(직원의 사망, 퇴직 등)로 인해 사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고객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5)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대주주 현황 >

- 2023. 12. 31 기준 -

성명	관계	보통주		우선주		합계	
		수량(주)	비율(%)	수량(주)	비율(%)	수량(주)	비율(%)
미래에셋캐피탈(주)	최대주주	182,785,000	30.20	6,000,000	3.89	188,785,000	23.01
합계		182,785,000	30.20	6,000,000	3.89	188,785,000	23.01

※ 전체 비율은 당사 보통주, 우선주, 2우B 발행주식을 합산한 발행주식 수 기준입니다.

< 임원현황 >

- 2024. 03. 26 기준 -

담당업무	대표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김미섭, 허선희	정용선 외 2명	정용선 외 3명	김미섭 외 2명